

2000. 11. 6(월)

제65회임시회제2차본회의

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總務社會委員會

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25.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0. 10. 25.
다. 상정일자 : 2000. 11. 1 (제6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조동현)

가. 제안이유

시군구의 행정정보화사업이 1단계 10개사업에서 2단계 21개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며,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개정

-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
 -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93명에서 895명으로 2명 증가(증가된 2명은 2002. 12. 31일까지 한시정원)
 -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79명에서 881명으로 개정
- 위 정원 증가에 따라 동조례 부칙 제2조 [별표2]에 의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

구 분	정 원		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925명	=	정원의 총수	927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910명		1. 집행기관의 정원	912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5명	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5명

※참고 : [표2] 의 정원은 2001. 7. 31일까지의 한시정원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검토

- 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,713호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”에 관한 규정 제21조(정원의 규정)에 배치되지 아니함

○ 행정적 검토

-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“시·군·구 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”에 따라 2002. 12. 31일까지 행정정보화 실무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인 바,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하여야 할 개정사항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1) 현재 직급별 전산직은 몇 명이고, 만약 2명이 증원될 경우 몇급을 채용할 계획인가? (조병석위원)
- 2) 임시직이나 행정직 등 감원대상이 되는 직종에서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가? (조병석위원)

나. 답변요지 (자치행정과장 조동현)

- 1) 6급 1명, 7급 2명, 8급 3명, 9급 1명으로 총 전산직은 7명이며, 2명 증원은 9급 전산직으로 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내년

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기능직이 과원인 상태이므로 기능직 중
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.

2) 3명이 있으며, 기능직 중에서 시험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.

5. 토론 요지

“없 음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부. “끝” .